

화성시 동탄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계획 재공고

화성시 동탄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대상 직위	지정 등급	선발 인원	임기	직무 내용
동탄구 보건소장	일반직 (지방과학 기술서기관) ·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2년 *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동탄구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3

임 용 신 분

- 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 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 신분 유지

4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 연 령: 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이 없음
- 성 별: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거 주 지: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역법」 제76조 등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나. 응시자격요건

○ ‘다. 세부자격요건’ 상의 **필수요건(의사면허 소지자)**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① ~ ⑥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행 예정일 기준임**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재직)증명서상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무기간은 주 40시간 기준 시간비례하여 계산함

다. 세부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관련 학과)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u>관련분야</u>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u>관련분야</u>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u>관련분야</u>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④ <u>관련분야</u> 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u>관련분야</u>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⑥ <u>관련분야</u> 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은 경력 산정 제외

5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가능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
 - 시험방법: 온라인 응시(45분 내외)
 - 검사방법: ① 인성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② 직무수행 특성 등 평가
⇒ 검사결과를 면접시험과 연계함으로써 응시자의 자질 검증 강화
- 선발시험위원회 각 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 검정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7. 20.(월) ~ 7. 24.(금) [5일간]** *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화성시청 인사과 인사행정팀(본관 4층)

다.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라.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내실 곳: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개방형직위 채용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1만원)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합니다.

7

시 험 일 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인성검사(온라인)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 7. 29.(수) 예정	2026. 7. 31.(금) 예정	2026. 8. 3.(월) 예정	2026. 8. 6.(목) 예정
※ 합격자발표 등 채용관련 공고는 화성시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함			

8

보 수 수 준

가. 경력직 공무원: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거쳐 책정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동탄구보건소장	개방형 4호	-	70,490천원

다.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및 성과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라.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붙임서식)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과 인사행정팀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 발송 ※ 개방형 4호: 1만원	필수
2. 이력서 (붙임서식)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서류전형 제출서류(붙임서식)	해당 항목만 기재(비해당 항목 삭제 가능)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붙임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필수
6. 동의서 각1부 (붙임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7. 최종학력 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학사학위 이상은 각 학위별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일체 제출	필수
8. 경력증명서 (붙임서식 또는 기관서식)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과 날인, 연락처 기재 필수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기재 후 날인 제출 - 폐업회사 경력의 경우, 폐업 전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폐업사실증명서' (홈택스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 당해분야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가능 - 필요 시 관련분야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업무분장표 등을 추가 요구 할 수 있음	필수
9.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홈페이지 또는 1577-1000에서 발급 -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추가증빙서류(급여내역서 등) 제출	필수
10.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본인 자격요건 해당부분에 √ 표시	필수
11. 기타 증빙 서류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관련분야 수상실적, 관련전공 증명서 등	해당자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플래그(띠지)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 해외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40시간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ex)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	

- 가.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라.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아.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차.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임용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인사과 인사행정팀(☎031-5189-211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5189-4337)

동탄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I. 기본사항

1. 기관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화 성 시	동탄구보건소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0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20
○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20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0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0
6. 관련분야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학문적·전문적·기술적 지식 ○ 보건의료 관련 기존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지방행정 업무전반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일반적 지식 ○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강화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II .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무 ☐ 유 ② 필수자격증 ☐ 무 ☒ 유 ※ 「지역보건법」 제15조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 「지역보건법」 제15조
나. 경력요건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i)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iii)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i) 비전 제시 능력 및 혁신지향 능력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능력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 업무개선 능력 iii) 자원활용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i)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사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 무, ☐ 유 ② 외국어 : ☐ 무, ☐ 유 ③ 정보화능력 : ☐ 무, ☐ 유 ④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